

[공 고]

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-883호

-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6지구) 공공재개발사업 -
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23호(2000.02.0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29호(2007.05.17.)로 용두1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45호(2009.09.10.)로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「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6지구) 공공재개발사업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6지구)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2127-4293)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무실(☎6940-8842) 또는 용두1구역(6지구) 주민대표회의 사무실(☎967-6646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6월 4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6. 6. 4.(목) ~ 2026. 6. 19.(금) [15일간]

나. 공람장소

- 1)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)
- 2) 용두1구역(6지구) 주민대표회의 사무실
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406, 화성빌딩 407호)

다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명칭 :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(6지구) 공공재개발사업
- 2) 사업시행자 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(SH)
- 3)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-1번지 일대
- 4) 시행면적 : 20,600.50㎡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96개월
- 6) 건축계획 : 지하8층 ~ 지상61층, 공동주택 4개동(958세대) 및 부대복리 시설, 오피스텔 138실
- 7)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음)

라. 기타사항 : 본 사업시행계획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,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. 끝.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6-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. .

제 출 자: 계획예산과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’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합리적인 적립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 효율적 조정 및 완화(안 제4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근거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없음.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, “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%”를 “세입액이 전년 대비 20%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0%”를 “150%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생 략)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%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1. 「지방자치법」----- ----- 세 입액이 전년 대비 20% ----- ----- -----
2.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%를 초과하는 경우,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2. ----- ----- ----- 150% ----- 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규 발췌문

■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의견서

입법예고명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견 제출자

성명
(개인/단체)

전화번호

주소

의견제출 내용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